

## 사회과교육에서의 법교육 — 초·중·고 학생들의 법태도 형성 —

尹鎔柝·朴性燦  
(社會教育科)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법은 마치 식량이나 주거 공간 그리고 각종 천연 자원 등이 그 사회의 유지 및 존속과 발전에 꼭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 사회의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일상 생활의 대부분이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보호받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은 출생 신고가 필요한 요람에서부터 법에 의한 재산의 상속 분할이 결정되는 무덤까지 복잡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법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법은 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不義에 저항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사회의 평화적인 변화와 발전을 담보해 주는 사회 운영의 기본 메카니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최근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각종 문제와 도전들, 즉 각종 범죄, 정치인의 범죄, 정부의 권력 남용, 기타 청소년 범죄 등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법의 문제이다. 각종 범죄들이 늘어 날수록 시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서 法과 공권력의 비대화와 남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경향은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법적 무력감과 냉소주의(기피심리)를 증가시키기 마련이다(Gerlach, R. A. & Lamprecht, L. W., 1975:2).

각급 학교의 법교육은 이러한 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 이 점에 각급 학교 법교육의 존립 가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법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법태도의 발달'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법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 법교육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의 의의

법의식 발달에 관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법학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들과 Piaget와 Kohlberg의 인지 발달론에 기초를 둔 연구들의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일반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법질서는 법제도와 구성원의 법에 대한 태도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즉 한 나라의 법의 형성 및 집행을 보장해 주는 큰 테두리는 결국 국민들의 법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법의식은 법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한 배경 내지는 여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법적 추론(Legal Reasoning) 양식을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법태도를 경험적으로 조사 분석해 보는 것이 학생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법교육과 현장 수업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에 대한 태도의 측정 결과를 학교 현장에서 시험 점수화시켜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도 교실의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태도 평가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인지적 지식의 평가 이외에도 태도 평가를 사용함으로써 학생집단 전체의 평균적인 발달 정도를 알 수 있고, 학생들의 태도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학기 시작 전에 학생들의 초기 태도 수준(Entry-Level Attitudes)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정한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교수전략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법태도에 관한 연구가 단순히 실태 조사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생들의 법태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개념으로 체계화 하였으며 또 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법태도를 학교 수준별, 남녀 학생별, 계층별로 진단하였고, 그 원인까지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비록 대단히 미흡하지만 앞으로의 법교육 연구의 기초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또한 외국에서 이루어진 이와 유사한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법태도의 발달에 관한 비교 문화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의의도 지닌다 하겠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 1. 법교육의 의의와 법태도 발달의 중요성

#### 1) 법교육의 의의

과거에는 법에 대한 공부는 주로 전문 법조인들의 몫으로만 여겨졌다.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으로는 법을 지극히 전문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린 잘못된 통념의 탓도 있지만, 심지어는 법을 “신비한” 것으로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의 탓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예전과는 달리, 교사나 법조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법을 전적인 법조인에게만 맡겨 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중요한 경향이다. 따라서 흔히 이르기를 학교에서 법과 법체계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실제 사회로 학생들을 내보내는 것은 피치못할 분쟁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쉽게 상처받기 쉬운 불완전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법은 곧 우리 사회의 역사적 유산의 큰 부분들을 이룬다. 따라서 학교의 사회과 교육에서 법에 관한 주제를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역사적 본질과 그것의 탐구를 예속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법교육의 개념은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표현은 다양하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미국 변호사 협회의 청소년 시민교육 특별위원회(American Bar Association's 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vics)는 “법교육이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의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평가력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된 학습 경험”이라고 이를 정의한다. 여기서 ABA 청소년 시민 교육 특별 위원회는 법교육이 강조해야 할 측면에 관해서, 일상 생활(daily lives)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규범 예컨대 도로법(Street Law)등을 강조하고 그 외의 법교육의 내용으로서 형법, 청소년법, 소비자 보호법, 가족법, 환경법, 지주 소작인법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을 강조하는 입장과 달리 자유, 정의, 평등, 재산, 권력, 권위, 사생활의 자유, 책임 등과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논쟁점이 분출하는 실생활(real life)의 맥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점들에 주목하는 입장도 있다(허종렬, 1991:89-90).

결국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법교육이란 모든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법 및 질서의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준법의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며 또 이를 통하여 사회의 질서를 정연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법교육은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과 법률 전문가 교육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지만, 이 글에서의 대상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법교육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법교육이란 학생들에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의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

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개발할 기회를 조직적으로 제공하여 준법의 태도를 기르며, 국가 사회 생활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법교육의 정의 및 강조점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실생활과의 연계성, 그리고 이를 통한 학생들의 흥미감 등이 법교육에서는 특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법률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크게 강조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법을 배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라, 법을 배우는 방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친숙하게 만드느냐 하는 점이다. 법교육은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회과 교육에서는 법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초월한 그 무엇을 고무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단순히 법의 이상적인 상태 만을 기술하는 것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법제도를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회과 교사는 학생들에게 법을 우리 사회의 생생히 살아 있는 그리고 전체 사회의 통합된 부분으로, 또한 개인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생존 능력이 있는 수단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법과 관련된 가치와 절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응용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일시적이고 비현실적인 정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판에 박힌 듯한 수업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인간의 이해 관계에서 파생되는 많은 법적 사례와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것은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강한 인식과 노력의 부족은 학생들의 법교육에 대한 흥미감을 떨어 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사의 수업 방식 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며 결국은 학생들의 높은 법적 허무감과 기피 현상을 초래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 2) 법교육의 목표

초·중·고에서의 법교육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을 대법률가로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미니 법학자(mini-Lawyer)로 키우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 암기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교육의 주요 목적은 실제적인 법학 그 자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나 취급할 일이고, 초·중·고 학교의 사회과 교육에서는 그렇게 광범위한 법학 교육을 할 시간도 없고, 교사들에게 그러한 전문 법률가 수준의 법지식을 요구하는 것 또한 무리이다.

결국 법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와 그 바탕에 깔린 가치를 이해하며, 사회 문제와 갈등을 좀 더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법

과 범질서에 관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잘못된 개념화와 획일적인 사고를 타파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와 법제도 그리고 정부의 활동 등에 참여하려는 의욕과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교육의 목표를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Freund(1973:363-365)는 오늘날 미국 사회의 위기를 크게 범준수의 위기와 학교의 위기로 파악하면서, 특히 학교의 위기는 “생기가 없는 죽은 지식의 꾸러미”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과 교육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준열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학교 법교육의 목표를 도덕적 추론 능력(moral reasoning), 범질차의 인식(Appreciating Legal Process), 범개념의 획득(Acquiring Legal Concepts)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Parker(1989:353-354)는 시민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학교 법교육의 목표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지방과 중앙 정부의 구조와 기능 및 헌법에 나타나 있는 정치 이론이나 논쟁에 관한 지식, 공공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적 덕성의 함양, 공공의 문제에 대한 참여적 시민성의 고취가 그것들이다.

또한 Gerlach & Lamprecht(1975:20)는 법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로서 범원칙과 문제의 이해, 학습한 지식의 실생활에의 적용능력, 범문제와 상황에 대한 분석력, 긍정적인 범태도의 발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교육의 목표에 관한 논의는 결국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일반적인 교육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즉 우선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범질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범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또한 범과 범제도에 관한 학생들의 태도, 가치 등을 명료화시키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 3) 법교육과 범태도 발달의 중요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범전으로 알려진 Hammurabi 범전이 제정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인데 그 시대에도 범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발달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마 시대에는 범학이 특히 발달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로마에서는 소년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강하게 또 신과 부모 및 범물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상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로마 전기 교육의 특색인 가정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이었던 바,

특히 오늘날의 국민 학교 단계에서 벌써 12표법을 동요로 만들어 암송하게 할 정도였다(안상원의, 1975:40).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삼국 시대부터 법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라의 율령전 박사(律令典 博士)나 고려 시대의 국자감(國子監)의 교육 내용으로서 율학(律學)이 존재한 점 그리고 근세 조선의 “仁”의 강조 역시 결국은 준법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ibid:312).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은 전통적인 교육 내용의 하나로서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나라들이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법에 대한 무력감과 기피 경향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법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 가는 현대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민주 시민의 자질의 함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에서, 특히 학교 법교육에서 법태도의 발달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2. 법태도의 정의 및 구성요소

미국의 사회학자 Ross가 20세기에 들어설 무렵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 전체에 대하여 “사회 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 그는 법을 사회 통제의 가장 전문화되고 고도로 세련된 수단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회 통합의 수단으로서의 법의 기능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크게 운위될수록, 과연 사회 통합이 법에 의해서 단지 주장으로 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그만큼 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이영희 외 공역:163).

법제도는 사회 통합이 근본적으로 비법률적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통합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위협과 부정적 제재의 집행만을 통해서 성취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국가가 강제 수단의 동원에 의지하지 않고, 규범 수령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법규범이 준수될 때 비로소 그것은 실효성을 갖는다. 따라서 법의 유효성은 법 적용 대상자의 자발적인 복종, 즉 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이와같이 법의 유효성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기초에는 법감정, 법의식, 법문화, 법태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법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로서 법문화, 법감정, 법의식 등의 개념이 뚜렷한 구분없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이수성(1984:68)은 법의식을 현저하게 법적인 현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및 감정적인 심리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이 견해에 의하면 법의식을 인식, 평가 및 정서, 감정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법의식이라는 말을 전술한 바와 같이 광의의 의미로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법감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부자연스럽고, 법의식을 법현상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평가적 심리 경향으로 이해한다면 굳이 용어를 애매하게 법문화, 법의식, 법감정 등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사회 심리학적 입장에서 법태도(Legal Attitudes, Law-Related Attitudes)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태도와 법의식의 두 용어를 엄밀한 구분없이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법이란 단순한 정태적인 일련의 법칙들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법은 법정에서, 행정기관에서 심지어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태적인 사회과정으로서의 법이 현실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적 행위자가 법규범의 타당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즉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은 행위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효율적인 규범 체계로서 의존되지 못하는 것이다(임희섭, 1974:38). 이렇게 본다면 개인들의 법태도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법에 의존하고 법을 사용하느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독립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들의 법태도는 다시 인지적(Cognitive), 정의적(Affective) 및 행동적(Behavioral) 차원의 3가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이다. 즉 한 개인의 법태도는 인지적 지식 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원에서의 법적 동일감 그리고 행동적 차원의 법적 사용 능력 등이 복합되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ibid:39). 그러나 관련 연구에 의하면 법태도를 위의 3 영역으로 크게 나눈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하지만 구체적으로 법태도를 세분화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회과에 있어서 법교육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고 단지 법사회학 분야에서 약간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희섭은 법태도를 법의식의 근대화 정도, 법적 소외감, 법적 사용능력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수성(1983:72-84)은 법지식의 정도, 법의식의 근대화 정도, 법적 소외감, 법적 신뢰감 등으로 나눈 바 있다. B.Fraser와 D.Smith는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한 광범위한 면접 조사의 결과 법태도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Fraser, B. J. & Smith, D. L., 1980:406).

- ① 정상인으로서의 법관에 대한 인식(Normality of Judges)
- ② 법교육에 대한 즐거움(Enjoyment of Legal Studies)
- ③ 법의 역동성(Dynamic Nature of the Law)

④ 법적 효능감(Influenceability of the Law)

⑤ 법이해도(Comprehensibility of the Law)

또한 Anderson(1980:384)은 법교육의 주요 목적을 학생들의 부정적인 법태도를 극복하고 민주 사회의 요구에 발맞춘 법태도의 함양으로 규정하면서, 법교육에서 중요시해야 할 학생들의 법태도로서 법인식의 근대화, 법적 지식, 참여감, 신뢰감 등을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법태도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의 일반적인 예를 따라서 법태도와 영역을 크게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구체적인 구성 요소는 기존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3. 연구과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 과제

본 연구는 Fraser와 Smith의 법태도에 관한 경험 분석적 연구와 국내 기존의 법태도에 관한 연구를 응용하여 우리 나라 학생들의 법태도 발달의 특징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법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를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의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법태도의 여러 측면들은 학교 수준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법태도가 남녀 학생별, 계층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셋째, 법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흥미감과 신뢰감)이 부정적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 2) 연구 방법

학생들의 법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된 본 연구는 그 조사 대상을 서울 시내 국민학교 5학년의 남녀 학생(313명)과 남녀 중학교 2학년(301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317명)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인 학생들의 법태도(Law-Related Attitudes)를 측정하기 위해 Fraser와 Smith가 개발한 법태도 척도와 국내의 임희섭이 사용한 법태도에 관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적 분석은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과 T 검증을 이용하였다. 학교 수준별 차이와 계층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이용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이용하였다.



### III. 학생들의 법태도의 형성과 발달

#### 1. 한국 학생의 법이해도

우리 학생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즉 법의 본질을 도덕, 징벌, 형벌 등으로 이해하는 전근대적 법인식관에서 법의 사회적, 계약적, 민법적 성격을 많이 의심하는 근대적 법인식관으로 변화해 가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우리 학생들의 법인식의 근대화에 관한 전체적인 평균은 약 18 정도로서 이는 학생들의 법인식에는 전근대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를 다시 학교 수준별로 살펴 보면, 학년 수준이 올라 가도 거의 의미있는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 계층별 차이를 분석해도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없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학생들은 아직 神的·초월적 법률관, 징벌적·형벌적 법률관이라는 유교 사회 특유의 전근대적 법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였고, 또 학교의 법교육이 학생들의 법인식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 법률관에서 적극적인 법태도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법인식의 근대화는 학교 법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2. 한국 학생의 법적 흥미감

우리 학생들의 법에 대한 흥미감의 정도를 측정한 전체적인 결과가 위의 도표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의 법적 흥미감에 관한 전체적인 평균은 16정도로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이를 다시 학교 수준별로 살펴 보면 대체적으로 중등학생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더욱 흥미감이 떨어지며 ( $P < 0.01$ ),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흥미감이 낮았다( $P < 0.01$ ). 계층별로 살펴 보면 대

〈표1〉 학교 수준별 법흥미감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국민학교	307	17.19	4.01
중 학교	297	16.13	3.95
고등학교	317	16.52	3.58
유의도	F = 5.92		P = .002

〈표2〉 남녀 학생별 법흥미감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남 학생	461	16.08	4.04
여 학생	460	17.16	3.61
유의도	t = 4.33		P = .000

체로 상류층의 학생들이 중·하류층 학생들보다 흥미감을 강하게 가지는 경향은 볼 수 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생활 수준이 학생들의 범태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법에 관한 내용이 흥미없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얻은 자유응답의 결과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가 아래의 도표에 제시되어 있다. 즉 중등 학생들의 흥미감이 국민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흥미감이 더 낮아지고 있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 보았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법에 관한 내용이 흥미 없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자유 응답 내용들을 몇 가지로 유형화해서 학교 수준별로 비교한 결과가 아래의 도표에 나타나 있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학교 수준별로 흥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국민 학생들이 법적 흥미감을 잃는 원인을 살펴보면 “사회에 不法이 난무하고, 어른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유형의 응답(33%) 과 “교과서 내용이 너무 지루하다”라는 응답(33%)이 가장 많고,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26%)의 순으로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다. 즉 국민 학생들의 법적 흥미감이 떨어지는 원인은 교사의 수업 방법이나 시험의 압박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사회의 탓 또는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나 내용의 난해함 등

〈표 3〉 법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원인(학교 수준별 비교)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N	%	N	%	N	%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	33	26	62	29	20	6
교과서의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는 상관 없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다.	8	7	17	8	119	38
교과서의 내용이 많고 지루하다.	40	33	60	28	63	20
시험 때문에 공부하려니까 싫증난다.	·	·	12	6	35	11
교사의 수업 방법이 너무 천편 일률적이다.	·	·	11	5	35	11
수업 방법의 개선 요구(토론이나 역할 놀이 등을 요구)						
사회에 불법이 난무하고 또 어른들이 법을 지키지 우리도 법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40	33	47	22	35	11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도 국민 학생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중학생의 경우에도 흥미감이 떨어지는 원인은 막연한 사회의 탓(22%), 교과서의 서술 방식(28%), 내용의 난해함(29%)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 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중학생의 경우 “시험 때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진다”(6%), “선생님의 수업 방법이 너무 친절 일률적이다. 수업 방법을 바꾸자”(5%)라는 반응이 제법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중학생의 경우는 국민 학생들과는 달리 시험에 대한 압박을 약간 느끼고 있으며 교사들의 수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히 주목할만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고등학생들의 법적 흥미감이 떨어지는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의 내용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의 내용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또 배우고 있다. 차라리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유형의 반응이 가장 많았고(38%), 기타 교과서 내용의 지루함(20%), 시험에 대한 압박(11%), 교사의 수업 방법에 대한 불만(11%), 막연한 사회의 탓(11%)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교과서의 내용이 어렵다(6%)라는 반응은 격감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학교의 법교육 개선 방향에 관해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3. 한국 학생의 법적 신뢰감

학생들의 법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된 전체적인 결과가 위의 도표에 나타나 있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법적 신뢰감에 관한 전체적인 평균은 12 정도로 대단히 낮은 편이었다. 이를 다시 학년 수준별로 살펴 보면 학년 수준이 올라 갈수록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다( $P < 0.01$ )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의 법에 대한 신뢰감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원

〈표4〉 학교 수준별 법신뢰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국민학교	311	14.59	3.28
중 학교	300	12.17	2.80
고등학교	316	11.57	2.23
유의도	F = 102.65		P = .001

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 보았다. 즉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법이 믿을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기에서 응답의 유형들을 제시할 필요도 없이 사회 일반의 무질서함을 대부분 들고 있었다. 즉 “사회에 不法이 난무하고, 어른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법을 믿을 수 없다”라는 유형의 응답이 압도적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한국 학생들의 법적 불신감을 자아 내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사회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학교의 법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청소년의 질서 의식에 관한 차경수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질서 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원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인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학교 질서 교육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차경수, 1981:75).

4. 한국 학생의 법적 효능감

학생들이 법의 實效性을 얼마나 믿고 또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의사가 얼마나 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즉 법적 효능감을 측정한 전체적인 결과가 아래의 도표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학생들의 법적 효능감에 관한 전체적인 평균은 14정도로 낮은 편이며, 이를 다시 학교 수준별로 살펴 보면 학년 수준이 올라 갈수록 효능감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다( $P < 0.01$ ). 그리고 성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법적 효능감이 낮으며( $P < 0.01$ ), 계층별 차이는 볼 수 없었다. 결국 우리 학생들은 학년 수준이 올라 갈수록 법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즉 흥미감과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적 무력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5. 한국 학생의 법적 사용능력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느낄때 법에 의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인 보호하려는 개인적인 역량을 사회학적 의미에서 법적 능력이라고 한다. 즉 행위자가

<표 5> 학교 수준별 법적 효능감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국민학교	306	16.32	4.22
중 학교	297	13.95	4.13
고등학교	312	13.65	3.99
유의도	F = 36.5		P = .001

<표 6> 남녀 학생별 법적 효능감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남 학생	458	14.34	4.39
여 학생	457	14.94	4.15
유의도	t = 2.19		P = .02

구체적인 사회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법을 사용할 의사와 자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하는 문제인 것이다. 학생들의 법적 사용능력을 측정한 전체적인 결과가 아래의 도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법적 사용능력에 관한 전체적인 평균은 18정도로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질문을 통한 응답의 결과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낮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다시 학교 수준별로 살펴 보면 국민 학생들에 비하여 중등 학교의 학생들의 법적 사용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P < 0.01$ ). 물론 이 말은 중학생과 고등 학생들의 실제적인 능력이 오히려 국민 학생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년 수준이 올라갈수록 법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 때문에 법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성별, 계층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학교 수준별 법적 사용능력

	N	평균	표준편차
국민학교	307	18.69	3.22
중 학교	299	17.55	3.07
고등학교	316	17.57	2.80
유의도	F = 12.16		P = .000

#### IV. 종합적 논의 및 법교육의 개선 방향

본 연구는 날로 그 심각성이 증가되고 있는 靑少年 問題 속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어떤 법태도 내지 법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학교 법교육의 방향 설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우리의 학생들이 어떤 법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학교 법교육의 성과가 무엇인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법태도의 하위 영역별로 전체적인 특징과 함께 특이한 일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논의의 종합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특징적인 점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의 법태도를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그 논의를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학생들의 법인식관에는 법의 본질을 초월적·징벌적·형벌적 성격에서 찾는 전근대적 요소와 사회적·계약적·민법적 성격에서 찾는 근대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인식관은 학년 수준이 올라 가도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법에 대한 낮은 흥미감과 신뢰감으로 인하여 학년 수준이 올라 갈수록 법에 대한 무력감과 기피 성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학교 법교육은 순수 법학 지식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단순히 전달하거나 입학 시험 위주의 교과 중심적인 방향에 치중된 나머지 학생들의 법태도의 발달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법태도에 관한 이상과 같은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학생들의 법태도의 발달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한 몇 가지의提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2. 법교육의 개선 방향

### 1) 학생들의 법흥미감의 제고

법교육은 단편적인 법지식의 전달에 치중하여 작은 법학자를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법적 흥미감을 제고시켜 법에 대한 친밀감을 높혀 주고 이를 통하여 법생활화가 가능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그 원인에 관한 자유 응답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민 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쉽고 간략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내용의 난이도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단지 그 내용에 있어서 초·중학교의 내용을 반복·심화시키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친밀감을 높혀 줄 필요가 있다.

### 2) 법교육과 법현실의 연계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우리 학생들의 법적 신뢰감이 극히 저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에서 배우는 법이상과 우리의 법현실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고교의 교육 과정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조심스럽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교과서에 현재와 같이 “원리적인 것”, “좋은 것”, “이상적인 것”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우리의 부분”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부분을 강화하여 학습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정치·사회적인 법현실로 인하여 법제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어 가는 현실을 다소나마 막아 줄 필요가 있다.

### 3)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들의 공식적인 수업을 통하여 행동 발달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을 통하여 은연 중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교육은 사회 생활의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의 통해서는 긍정적인 법태도의 발달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잃어 가는 원인에 관한 위의 자유 응답의 결과를 살펴 보면,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교사의 천편 일률적인 강의식 수업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알았다. 따라서 지도 방법에서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법생활을 실천하며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넓혀 준다는 의미에서 토론과 역할 놀이, 시청각 교육 등 수업 방법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법교육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유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4) 법교육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인식의 강화

위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법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인 현실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학생들의 법태도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학교 밖의 사회적인 상황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학교 법교육의 중요성이 과소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 법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법태도의 개선을 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정치·사회적인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바로 이 점이 법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윤정(1991),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고재혁(1987),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그 교육적 함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안상원, 신천식(1975), 『한국·서양 교육사』, 서울:형설 출판사.
- 양건(1986), 『법사회학』, 서울:민음사.
- 윤태림(1972), “한국인의 법의식”, 『교육논집』, 제 5권.
- 이강하(1983), “한국 어린이들의 정의 개념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제 3 집.
- 이수성(1984),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 25권 3호.
- 이수원(1973), 『사회 심리학』, 서울:익문사.
- 임희섭(1974),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법학』, 제 15권 1호.
- 전병재(1980), 『사회 심리학』, 서울:신성출판사.
- 차경수(1981), “청소년 질서 의식의 실태와 질서 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 차경수(1984),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의 목표로서의 시민의 자질의 개념 연구”, 『사대논총』 제 28집.
- 최대권(1983), 『법사회학』, 서울:서울대 출판부.
- 최종고(1970), “한국인의 법감정”, *Fides*,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 27집 1호.
- 최종고(1982), 『한국의 서양법 계수사』, 서울:박영사.
- Allport, G. W.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ss: Clark Univ. Press.
- Anderson, C. C. (1980), “Promoting responsible Citizenship through Elementary Law-Related Education”, *Social Education*, May.
- Almond, G. A.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Doob, L. W. (1947), “The behavior of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Vol 54.
- Fraser, B. J., & Smith, D. L. (1980), “Assessment of Law-Related Attitudes”, *Social Education*, May.
- Gerlach, R. A., & Lamprecht, L. W. (1975), *Teaching about the Law*, Cincinnati, Ohio: The W. H. Anderson Co.
- Gross, N. (1977), “Law-Related Education: current trends, future direction”, *Peabody*



- Journal of Education*, 55.
- Gross, N., & Messick, R. (1978), *Social Studies for our times*, New York:Wiley.
- Hess, R. D., & Torney, J. (1967),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 Hunt, M. D., & Metcalf, L. (1968), *Teaching High School Social Studies:Problems in Reflective Thinking and Social Understanding*, New York:Harper and Row.
- Jarolimek, J., & Huber, M. W. (1974), *Reading for Social Studies in Elementary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Pub.Co.
- Jhering, R. v., *Der Kampf ums Recht*, 심재우 역 (1990), 『권리를 위한 투쟁』, 서울: 박영사.
- Kohlberg, L. (1966), "Moral Education in the school:A Development View", *School Review*, 74.
- Kohlberg, L., & Tapp, J. L. (1971), "Developing Senses of Law and Legal Jus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7.
- Krech, D., & Cruchfield, R. A. (1948), *Theory and Problem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Piaget, J. (1965),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Free Press.
- Rehbinder, M., *Rechtssoziologie*, 최종고 외 (역) (1984), 『법사회학』, 서울:법문사.
- Rokeach, M. (1968), "The Nature of Attitudes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Macmillan Co.
- Rokeach, M. (1970), *Beliefs, Attitudes and Value*,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Tapp, J. L., & Levine, F. (1977), *Law, Justice and the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Abstract**

A Study on the Law-related Educ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Korea

Yoon, Yong Tak and Seong Hyeok Park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favorable attitudes is widely accepted as a highly important aim for education, and for Law-related Education in particular.

In this study, law-related attitudes are defined as five different attitudinal dimensions, understanding of law, interest of law, reliability of law, efficacy of law, competence of law.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progress of law-related attitudes of the Primary & Secondary students and to examine and improve the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The inquiry was conducted to the 468 male and the 463 female students of the ten Primary & Secondary schools located in Seoul, to gather 931. Statistical methods applied are T-test and One-way ANOVA.

As the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attitudes of Korean stud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general, Korean students' understanding of law is concentrated on their interests in the punitive, criminal law-like aspects of law and the social, contractual, civil law-like aspects of law alike. So Korean students' understanding of law is mingled with the pre-modern and the modern legal values. Above all, though school years go up, the traditional pre-modern legal values do not appear to move toward the reasonable modern legal values.

And due to the skepticism about the legal reliability and low level of the legal interest, as school years go up, senses of legal incapacity and tendency of legal avoidance are more and more deepening.

So Law-related Education of the school nowadays does not encourage students to develop

favorable legal attitudes.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favorable legal attitudes of students, we should have more interest in and make best endeavours to develop favorable legal attitudes of students.